
Policy and Law Report _Vol.8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4.5 ~ 4.11) -

April 12,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및 입법예고 현황, 정부부처 및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간 일정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일정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p>•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p> <p>기획재정부는 「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함</p> <p>주요 안건으로는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 ③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④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⑤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⑥ 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⑦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 ⑧ 뉴딜입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됨</p>	<p>2021-04-07</p>								
<p>산업통상자원부</p>	<p>•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 본격 개시</p> <p>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힘</p> <p>동 서비스는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함</p> <p>*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 (품목) 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 초음파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 등 신산업분야 수출유망 품목</p> <p style="text-align: center;">< 해외기술규제맵 제공 정보 내용 ></p> <table border="1" data-bbox="327 1415 1305 1733"> <thead> <tr> <th data-bbox="327 1415 523 1469">정보 종류</th> <th data-bbox="523 1415 1305 1469">상세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7 1469 523 1556">인증제도</td> <td data-bbox="523 1469 1305 1556">인증절차, 규제·인증·시험 기관, 규제대상품목군, 명칭(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 등</td> </tr> <tr> <td data-bbox="327 1556 523 1644">기술기준</td> <td data-bbox="523 1556 1305 1644">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관련 국제 표준, 명칭(국/영문), 출처(URL) 등</td> </tr> <tr> <td data-bbox="327 1644 523 1733">기술규제 제·개정 현황</td> <td data-bbox="523 1644 1305 1733">제·개정 중인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발굴된 미통보문에 대한 분석 자료</td> </tr> </tbody> </table>	정보 종류	상세 내용	인증제도	인증절차, 규제·인증·시험 기관, 규제대상품목군, 명칭(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 등	기술기준	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관련 국제 표준, 명칭(국/영문), 출처(URL) 등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	제·개정 중인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발굴된 미통보문에 대한 분석 자료	<p>2021-04-06</p>
정보 종류	상세 내용									
인증제도	인증절차, 규제·인증·시험 기관, 규제대상품목군, 명칭(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 등									
기술기준	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관련 국제 표준, 명칭(국/영문), 출처(URL) 등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	제·개정 중인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발굴된 미통보문에 대한 분석 자료									

부처	내용	일시
환경부	<p>• ‘환경기술산업법’ 시행으로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기여</p> <p>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p>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함.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③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 등이 있음</p>	2021-04-09
식품의약품안전처	<p>•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절차 마련</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기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함.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심의 대상 광고매체, ② 심의 제외대상 광고, ③ 재심의 및 이의제기 신청 절차, ④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점검 및 보고 등이 있음</p>	2021-04-07
	<p>•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등 산업 발전 방안 모색</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화장품 업계 대표, 협회·학회,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1년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② 해외 원료정보 등 록비 지원 확대, ③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 있음</p>	2021-04-08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p>•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 <p>금융위원회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 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함</p> <p>건전성 규제 강화 개선사항으로는 ①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신협법 § 42), ②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상향(시행령 § 17), ③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 마련(시행령 § 20조의2), ④ 상호금융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시행령 § 20조의2) 등이 있음</p>	2021-04-05
	<p>•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p> <p>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의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 공포, '21.4.6일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 사유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금융투자업자 신용공여 규모 산출시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 신설 (안 제4-23조), ②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안 제6-34조), ③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안 제6-35조) 등이 있음</p>	2021-04-05
금융 감독원	<p>•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 합리적 개선</p> <p>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실질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21.4.12 시행)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환권 효과에 대한 규정화(제5조제1항단서), ② 투자주식 평가방법의 합리화(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③ 자기주식 가산시점 변경(제5조제2항제6호), ④ 연결재무제표 활용도 제고(제5조제2항제7호), ⑤ 전기오류수정 반영 범위 확대(제5조제2항제10호) 등이 있음</p>	2021-04-06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제안 일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p>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임</p>	2021-04-0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p>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등록한 자 등으로 하고, 실태조사 내용은 재무·인력 및 연구개발·보유기술 현황 등으로 하는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p>	2021-04-06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분별해체의 대상으로 정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벽돌 등을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우선 제거해야 하는 건설폐기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04-06
금융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고금리 채무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100분의 24에서 연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p>	2021-04-06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제안일자
국토교통부	<p>•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법률이 개정('20.12.22, '21.6.23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라는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자산관리회사 인가 업무 시 사실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 ①자산관리회사 인가시 확인사항(안 제22조제4항 개정 및 별표3 신설), ②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설비요건(안 제22조제8항 신설), ③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④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안 제42조의4 신설), ⑤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사실확인업무 위탁(안 제47조의6제1항 개정) 등이 있음</p>	2021-04-07
금융위원회	<p>•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p> <p>상호금융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하고 신협 중앙회 임원 중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20.5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협의 법정적립금 사용 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협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반환기준 합리화(안 제17조), ② 상호금융업권에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 (안 제42조), ③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의 사용요건 완화(안 제49조, 제52조), ④ 상호금융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안 제78조의3, 제95조) 등이 있음</p>	2021-04-05
국무조정실	<p>•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 <p>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②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③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8조), ④ 국민정책참여단의 설치(안 제9조) 등이 있음</p>	2021-04-05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p>•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p> <p>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속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둬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p>	2021-04-05
	<p>•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p> <p>현행법상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영업중단 및 퇴거를 하게 되어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음</p> <p>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및 안 제20조)</p>	2021-04-06
기획재정 위원회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2인)」</p> <p>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되어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25%(중견기업 20%) 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8조 및 제132조)</p>	2021-04-0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여전히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함</p> <p>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p>	2021-04-08
정무 위원회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p> <p>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등)</p>	2021-04-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이용약관과 요금의 변경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 같은 CP(Contents Provider)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를 승인하는 등의 과정에 이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CP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p>	2021-04-07
환경노동 위원회	<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p> <p>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기준도 지키도록 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준수 기준에 포장 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을 추가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0조의3 신설 등)</p>	2021-04-07

3. 국회 주간 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 참조		
국회사무처	4/16(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34호 발간	
국회도서관	4/1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6호 발간 - 미국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례	
	4/13(화)	「현안, 외국에선?」 제9호 발간 - 영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호탄, 백서「미래를 위한 계획 제도」	
	4/15(목)	국외 현안리포트 - 제목: 유럽의 협력적 인공지능(AI) 규제 방안(가제)	
	4/20(화) 15:00	제14차「AI와 국회포럼」개최 - 주제 : 인공지능과 미래행정 - 발제자 :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온라인 개최
국회 예산정책처	4/13(화) ~14(수)	제2차 2021년도 읽어주는 NABO 보고서 - 2021 경제전망,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 2040년	Webex 비대면
	4월중	현안보고서 발간 -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4월중	분야별 전문지 발간 - 「NABO 경제 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 「NABO 재정동향&이슈」 021년 제1호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	4/12(월)	「이슈와 논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	
	4/30(금) 10:00	「전문가 간담회」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 이진규 CPO(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국회 미래연구원	4/15(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6호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4/22(목) 13:30	제1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 주제 :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 - 내용 : (발제)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 (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국회 회의실

[별첨] 제386회 국회(4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4/12(월) 14:00	법안심사2소위	법안심사
	4/13(화) 09:00	법안심사2소위	법안심사
농해수위	4/14(수) 10:00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4.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3(화) 14:00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대책과 입법과제	전재수 의원실, (사)소비자권익포럼 외	
4/13(화) 14:00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	권성동, 이원욱 의원실, 국회「모빌리티포럼」	여의도 이룸센터
4/13(화) 16:00	국회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 민주시민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과 독일 사례	한병도 의원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	줌 온라인 화상회의
4/14(수) 10:00	온라인 유통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	신영대 의원실	
4/14(수) 10:00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 국회 포럼	이원욱, 김영식, 조승래, 박성중, 변재일 의원실 외	글래드 여의도호텔
4/14(수) 14:00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	홍성국 의원실	유튜브 홍성국TV
4/15(목) 09:3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수진, 장철민 의원실 외	유튜브
4/15(목) 14:00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소병훈 의원실,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스카우트 연맹회관 1층
4/16(금) 09:30	기후위기 대응! ESG 진단과 촉진 방안 국회 세미나	한정애, 유의동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외	유튜브
4/21(수) 07:00	2021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 -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	설훈, 정진석 의원실, 상생과 통일포럼	CCM빌딩 12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